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규정번호	1-0-7		
제정일자	2015.09.01.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0	총페이지	2

제정 2015년 9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양학원(이하 ‘학원’ 이라 한다) 정관 제49조(명예퇴직) 및 제76조의2(명예퇴직)의 규정에 의하여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의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의 대상)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본 대학에 재직 중이며, 본 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근속연수 합이 20년 이상인 교직원으로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자진 퇴직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제3조(신청의 제한) ① 명예퇴직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 신청을 제한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4. 외부기관에 파견, 장기연수, 연구년 및 출장 중인 자
5.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6.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예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조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의 공지) 총장은 명예퇴직의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명예퇴직일 등 명예퇴직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의 신청)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총장은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심사 및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1. 근속연수

- 2. 신청자 소속 부서, 학부(과)의 현황
- 3.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여 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8조(대상자 통지) 총장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결정 사실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직원 제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고된 명예퇴직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0조(퇴직수당) 총장은 별도의 퇴직수당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책정하고 이사장이 확정한다.

제11조(퇴직장려금) 교직원이 명예퇴직 시 재직기간 중 공로가 많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명예퇴직 수당의 20%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 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선정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